

국가자격검정 인정 신분증 변경 안내

연이은 자격검정 부정발생과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대리응시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신분증 관련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, 이를 따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을 안내·공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
1. 인정 신분증은 아래와 같음

가. 규정 신분증

- ① 주민등록증(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)
- ② 운전면허증(경찰청에서 발행된 것)
- ③ 여권(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것)
- ④ 공무원증(장교·부사관·군무원신분증 포함)
- ⑤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(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)
- ⑥ 국가유공자증
- ⑦ 외국인등록증(외국인에 한함)

나. 대체 신분증(규정 신분증 발급이 불가·제약이 있는 사함에 한함)

< 주민등록증 발급나이에 이르지 않은 사람 >

- ① 학생증(사진·생년월일·성명·학교장직인이 표기·날인된 것)
- ② 재학증명서(NIEC에서 발행(사진포함)하고 발급기관 확인·직인이 날인된 것)
- ③ 신분확인증명서("별지서식"에 따라 학교장 확인·직인이 날인된 것)
- ④ 청소년증(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)
- ⑤ 국가자격증(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)

< 미취학아동 등 >

- ① 우리공단 발행 "자격시험용 임시신분증" (임시신분증 발급은 우리 공단 소속기관에 문의)
- ② 국가자격증(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)

< 사병 등 군인 >

- ① 신분확인증명서("별지서식"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증명·날인한 것)

다. 상기 규정·대체 신분증은 일체 훼손·변형이 없는 경우만 유효·인정

- ① 사진 또는 외지(코팅지)와 내지가 탈착·분리되어 있는 등 변형이 있는 것, 훼손으로 사진·인적사항 등을 인식할 수 없는 것 등은 인정하지 않음

2. 시험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시험이 정지(퇴실) 및 무효 처리됨.



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